

마포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5조에 의거 복지동행국장 전결을 확인함

문서번호	실뿌리복지과-1806
문서관개	대국민 공개
결재일자	2026. 1. 20.



주무관	기초보장팀장	실뿌리복지팀장	복지동행국장
한민경	고영민	조윤주	2026. 1. 20. 김경숙
협조			

새로운 마포 더좋은 마포

2026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계획

2026. 1.

복 지 동 행 국
(실뿌리복지과)

2026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 계획
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에게 법정급여 외 교육경비, 명절위문품비 및 월동대책비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

I 사업개요

☐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
- 2026년 저소득주민 부가급여 지원계획 안내(서울시 복지정책과-1292(2026.1.14.))

☐ 지원대상

-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(월동대책비)

－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현황(중복 제외/시설수급자·입양대상아동 제외)

구 분	2024.12.31. 기준		2025.12.31. 기준		증 감	
	세대	인원(명)	세대	인원(명)	세대	인원(명)
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수	6,565	8,479	7,155	9,134	▲590 (8.99%)	▲655 (7.72%)

－ 저소득 보훈 대상자 현황: 210가구 내외(서울지방보훈청 추천)

※ 저소득 보훈대상자는 월동대책비만 지급, 국기초 생계·의료급여와 중복수급 불가

☐ 지원내용

구 분	지원대상	지원내용(지원시기)	지원기준	예산소요액 (천원)
합 계				1,322,320
교통비 (교육경비)	생계·의료급여 수급가구 중·고등학생 (분기당 260명)	중·고등학생 교통비 (3월/6월/9월/12월)	1인당 연 432천원 (분기별 108,000원)	112,320 (시비100%)
명절위문품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(명절당 8,000가구)	명절위문품비 (설/추석)	가구당 50천원 (각 명절 시비 30천원, 구비 20천원)	800,000 (시비60%, 구비40%)
월동대책비	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가구 (8,200가구)	월동대책비 (11월)	가구당 50천원 (연 1회)	410,000 (시비100%)

☐ **소요예산 : 1,322,320천원** (시비 1,002,320천원, 구비 320,000천원)

○ 예산과목

구 분	정 책	단 위	세 부	편성목	통계목
시 비	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	사회취약계층 복지 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	저소득시민 부가급여지원	일반보전금	사회보장적 수혜금
구 비	국민기초생활보장	기초생활급여	저소득주민 위문사업	일반보전금	사회보장적 수혜금

☐ **2025년 지원 실적**

지 원 내 용		지 원 실 적				
		인원(명)			금액(천원)	합 계
		계	중	고		
중 · 고등학생 교통비	1분기(3월)	222	105	117	23,976	892명 / 98,820천원
	2분기(6월)	220	112	108	24,480	
	3분기(9월)	223	102	121	24,912	
	4분기(12월)	227	107	120	25,452	
지 원 내 용		지 원 실 적				
		인원(가구)			금액(천원)	합 계
설날, 추석 위문품비 (2월/9월)	설날(2월)	6,488			시 194,640	시 404,880천원 구 269,920천원 계 674,800천원
					구 129,760	
	추석(9월)	7,008			시 210,240	
					구 140,160	
지 원 내 용		지 원 실 적				
		인원(가구)				지원금액
		계	생 계의료	보훈대상자		
				생활조정 수당대상	생계지원금	
월동대책비	11월	7,127	7,027	30	70	356,350천 원

Ⅱ 세부 추진계획

① 교육경비(교통비) 지원

- 지원대상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중·고등학생
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.
 - 단,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으로 일반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 가능
- 지원금액: 1인당 연 432,000원
 - 교통비 산출내역: 900원(카드기준) × 일2회 × 월20일 × 12개월 = 432,000원
- 지원시기 : 연 4회, 분기별 지급(3월, 6월, 9월, 12월)

계	1분기 (3.1.~5.31.)	2분기 (6.1.~8.31.)	3분기 (9.1.~11.30.)	4분기 (12.1.~익년2.28.)
432,000원	108,000원 (36,000원×3개월)	108,000원 (36,000원×3개월)	108,000원 (36,000원×3개월)	108,000원 (36,000원×3개월)

- 신규수급자는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부터, 타 시·도 전입자는 전입일이 속한 달부터 당해 분기 지원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고, 휴학, 자퇴, 퇴학 등 학적변동과 소득변동으로 급여 중지가 결정된 때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을 중지함.
- 지급방법: 재학 여부 확인 후 수급가구 대표계좌에 입금
- 소요예산: 112,320천원(시비 100%) ※재학생 260명 기준

② 명절위문품비 지원

- 지원대상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
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.
 - 단,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으로 일반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 가능
- 지원금액: 가구당 100천원 (설·추석 각 50천원)
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가구 대표계좌에 입금
- 소요예산: 800,000천원(시비 60%, 구비 40%) ※8,000가구 기준

○ 지원시기 : 연 2회

구 분	지급기준일	지급일	추가지급 기준일 (명절 당일)
설날(2/17)	1/21	2/4	2/17
추석(9/25)	9/1	9/18	9/25

- 설날: 지급기준일 이후 2월 17일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추가 지급
- 추석: 지급기준일 이후 9월 25일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추가 지급

③ 월동대책비 지원

○ 지원대상: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

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.

단, 시설 밖 거주 보호연장아동으로 일반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지원 가능

-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중복지원 불가
-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서울지방보훈청장 추천·통보자 (210가구 내외)

○ 지원금액: 가구당 50천원

○ 지원시기 : 연 1회

구 분	지급기준일	지급일	추가지급 기준일
월동대책비(11월)	11/1	11/20	11/20

- 지급기준일 이후 11월 20일까지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는 추가 지급

○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가구 대표계좌에 입금

○ 소요예산: 410,000천원(시비 100%) ※8,200가구 기준

※ 급여별 추진 일정표

구분	사 업 명		지급 기준일	수요파악 (예산요청)	예산재배정	지원	결과보고
				자치구(보훈청) → 시	시 → 자치구	자치구 → 수급자	자치구 → 시
상 반 기	명절 위문품비	설(2/17)	1/21	1/28	2/2	2/4	3/6까지
	중·고생 교통비	1분기 (3~5월)	3/3	3/9	3/13	3/20	3/27까지
		2분기 (6~8월)	6/1	6/8	6/12	6/19	6/26까지
하 반 기	중·고생 교통비	3분기 (9~11월)	9/1	9/7	9/11	9/18	9/30까지
	명절 위문품비	추석(9/25)	9/1	9/7	9/9	9/18	10/14까지
	월동 대책비	겨울철 (11월)	11/1	11/6	11/11	11/20	12/4까지
	중·고생 교통비	4분기 (12~2월)	12/1	12/4	12/9	12/16	12/22까지

※ 상기 일정 및 지원계획은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·시행될 수 있음

Ⅲ 행정 사항

- 누락·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·관리 철저
 - 교통비 : 중·고등학교 재학 여부 확인 철저
 - 월동대책비 : 동일가구에 중복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생계·의료 수급 여부 확인 철저
- 동주민센터에서는 추진일정에 따라 명단 송부 및 결과 보고 철저
- 급여 지급기준일 이후 지원일까지 대상자 변동사항 확인 및 반영
 - 단독가구 사망자는 지급 제외
 - 서울시 내 자치구 간 전출시 급여 지급기준일 기준 자치구에서 지원
- 부가급여 개시일 등 기타 사항은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준용

붙임 2026년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사업 질의응답 1부. 끝.